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84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이용우·정준호·김남근
김기표·김태선·신장식
박홍배·강득구·이건태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한편, 주변 경관이나 환경, 주민피해 여부, 빛반사 등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

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제27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3.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3(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다.</u> <u>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u> <u>2. 제27조의2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u> <u>3.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u> <u>4.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u>